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74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등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행정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부여된 오염 사고 보고 및 현장조사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위임하고,

오염사고 관련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전자 우편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소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소 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 과정에서 신체절단·끼임 사고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소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소 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 과정에서 화재·폭발·화학물질 누출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가스·분진·화학물질 등에 의해 식품등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5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3.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제65조의2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2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조	법 제101조	500	750	1000
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1항제1호			

별표 2 제2호커목(중전의 처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1조제1항제1호”를 “법 제10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터목(중전의 커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1조제1항제2호”를 “법 제101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퍼목(중전의 터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1조제1항제3호”를 “법 제101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31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p> <p>1. <u>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소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소 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 과정에서 신체절단·끼임 사고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u></p> <p>2. <u>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소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소 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 과정에서 화재·폭발·화학물질 누출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가스·분진·화학물질 등에 의해 식품등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u></p>

제65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 6의2. (생략)

<신설>

7. 삭제

8. ~ 20. (생략)

제6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제3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또
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하
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
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65조(권한의 위임) -----

-----.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
른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장
조사

8. ~ 20.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 8. (생략)

<신설>

9. ~ 14.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8의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9. ~ 14. (현행과 같음)